#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62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황명선·윤종군·황정아

조계원 · 조인철 · 이기헌

민병덕 • 차지호 • 송재봉

이정문 · 염태영 · 이해식

서미화 · 김성회 · 한준호

장경태 · 김민석 · 문진석

박수현 의원(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은 대북전단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물 풍선은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육·해·공 3 군부가 모여 있는 중요 군사 도시인 계룡시 등 남부권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주민의 생명·안전 보장에 위험이 고조되고 있음

현행법은 주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고자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

#### 은 정당하다고 보았음

그러면서 법원이 전단등 살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전단등 살포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덜 침익적인 수단을 제시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등에게 살포 시간, 장소, 내용물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전단등 살포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신설).

### 법률 제 호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 접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에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전단등 살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살포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단등살포를 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1. 목적
-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 3. 장소
- 4. 살포하려는 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

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연락처

-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 6. 살포하려는 전단등의 내용물
- 7. 전단등의 살포 방식
- 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관할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④ 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전단등 살포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일시 24시간 전 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24조의3(전단등 살포의 금지 통고) 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전단등 살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에 전단등 살포를 금지할 것을 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전단등 살포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전단등 살포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 1. 전단등 살포가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전단등 살포 장소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 경지역으로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 가 있는 경우
- 3. 전단등 살포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전단등 살포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부대장은 예정된 전단등 살포가 제1항 각 호의 금지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전단등 살포의 금지 통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경찰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그 외에 금지 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했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 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 니 된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② (생략) <신 설>

아 개 정

지) ① -----

----. 다만, 제3호의 경우 제24 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 접 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전단등 살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전단등 살포를 하 려는 자는 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 를 살포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 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경 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 관 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1. 목적
-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 3. 장소
- 4. 살포하려는 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연락처

-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 6. 살포하려는 전단등의 내용물
- 7. 전단등의 살포 방식
- 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 시 내주어야 한다.
-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신 설>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관할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전단등 살포를 하지 아니하게 된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전단등 살포의 금지 통고) 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 장은 신고된 전단등 살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전단등 살포를 금지할 것을 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전단등 살포가 국민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전단등 살포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 <u>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u> <u>통고를 할 수 있다.</u>
- 1. 전단등 살포가 북한의 적대 행위를 유발하여 국가안전보 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 나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 를 끼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전단등 살포 장소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접경지역으로서 접경지역으로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전단등 살포 장소가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 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전단등 살포 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 작전 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부대장은 예정된 전단등 살포가 제1항 각 호의 금지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 단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 게 전단등 살포의 금지 통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경찰관서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하여야 한다.
③ 그 외에 금지 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